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필요성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 금년 2월 정부는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발생함과 동시에 모든 민간 부문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적 측면에서 외국 보험회사 및 공제 등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등에 관한 전문 지식, 해외 네트워크,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창출된 산업으로 이전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 환자에게만 적용가능하게 되었음.

● 하지만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도 유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예외조항을 두었음.

－ 의료법 제27조4항에서는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법 개정 이후, 2009년 5월 정부는 의해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추진하였지만 국회에서 무산되었으며, 금년 2월 또 다시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회사 등에도 유치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012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2012년 2월 22일 기재부 보도자료).

■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필요성은 법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음.

- 법률적 측면에서는 외국 보험회사와 비교했을 때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할 수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함.

〈표 1〉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병원 간 주요 협약체결 현황

외국 보험회사명	협약체결한 국내 병원
미국 AIG	세브란스, 우리들병원
미국 UHI	세브란스
MSH-China ¹⁾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가천길병원, 우리들병원, 인하대병원, 안양샘병원, 좋은강안병원
미국 CIGNA ²⁾	세브란스, 가천의대길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종병원, 인하대병원, 청심국제병원, 한양대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동경화재보험	자생한방병원

주: 1) 2010년 7개 병원과 진료비 직불계약 체결.

2) 2012년 1월 11개 병원과 진료비 직불계약 체결(이들 의료기관이 자사 보험상품 가입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원화로 대금 지급).

-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전문성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표 2〉 보험회사의 아시아 진출 현황

국가	도시	개수	회사명
일본	동경	6개	삼성생명(사), 대한생명(사), 교보생명(사), 삼성화재(사), 현대해상(지), 코리안리(사)
중국	북경	12개	삼성생명(법), 삼성생명(사), 대한생명(사), 교보생명(사), 홍콩생명(사), 삼성화재(사), 현대해상(법), 현대해상(사), LIG손보(사), 동부화재(사), 서울보증(사), 코리안리(사)
	상해	3개	삼성화재(법), 현대해상(사), LIG손보(사)
	남경	1개	LIG손보(법)
홍콩	홍콩	2개	코리안리(법), 삼성생명(법)
베트남	호치민	5개	대한생명(법), 삼성화재(법), 현대해상(사), LIG손보(사), 동부화재(사)
	하노이	3개	삼성생명(사), LIG손보(사), 서울보증(사)
싱가폴	싱가폴	3개	삼성화재(사), 현대해상(법), 코리안리(지)
인도	뭄바이	2개	삼성생명(사), 삼성화재(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개	삼성화재(법), 메리츠화재(법), LIG손보(법), 동부화재(사)
태국	방콕	1개	삼성생명(법)
UAE	두바이	3개	삼성화재(사), 서울보증(사), 코리안리(사)
총계		45개	

주: (법)법인, (지)지점, (사)사무소.

- 이미 국내보험회사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어 국가 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환자 유치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대상이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특화 보험상품 개발 촉진, 관광, 숙박 및 요식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붕괴 및 민영건강보험 활성화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불평 등 확대 우려 등의 반대 의견이 존재함.

- 향후 내국인 환자 유치 활동까지 논의가 확대되어 허용될 경우 민영보험회사가 특정 병원과 연계한 민영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보험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는 주장(2009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 하지만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며, 오히려 외국인 대상 민영건강보험시장의 확대 및 새로운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시장확대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아시아 지역은 급격한 경제성장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서비스 지역이므로 국내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시장이 될 수 있음. [kiri](#)